



# 국토안전관리원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·제출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제6항 ‘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’ 관련입니다.
3. 위 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.
4.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을 담당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**10월 15일**까지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5.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3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**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**는 매년 **10월 31일**까지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.

※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은 **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**(www.sfms.or.kr)에서 제출받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\* 회원가입 안내 : ‘붙임2.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시스템 입력 안내 매뉴얼 - 4p’ 참고

<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계통도>

시·군·구 1)	① 신규 계획 수립	광역시·도 <sup>2)</sup> 10월 15일	① 확인 및 승인	국토교통부 [국토안전관리원] 10월 31일
	② 보고 및 확인요청		② 최종 제출하기	
	→		→	

1) 시·군·구 : 신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작성(변동이 없는 시설도 제출하여야 함)

2) 광역시·도 : 시·군·구가 작성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확인 후 최종 제출

6. 따라서, **광역시·도**의 담당자분들께서는 **시·군·구**의 소규모 취약시설별 담당 부서로 해당 공문을 전달하여 적시에 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**관리계획 미제출 시 차년도 소규모 취약시설 대상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**되오니,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종류	담당자(예시)
경로당	OO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담당 주무관
어린이집	OO광역시 OO구청 보육여성과 어린이집 담당 주무관

전통시장	OO군청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담당 주무관
옹벽	OO시청 안전총괄과 토목시설 담당 주무관

\* 각 상황별 시설, 지자체, 담당과에 대한 예시이며, 해당 명칭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.

- 붙임 1.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관련 법령 등 소개 1부.  
 2.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시스템 입력 안내 매뉴얼 1부. 끝.

## 국토안전관리원장



수신자 서울특별시(중대재해예방과장), 부산광역시(안전정책과장), 인천광역시(사회재난과장), 대구광역시(도시안전과장), 광주광역시(안전정책관), 대전광역시(재해예방과장), 울산광역시(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), 경기도지사(안전기획과장), 경상북도지사(사회재난과장), 경상남도지사(사회재난과장), 강원특별자치도지사(사회재난과장), 충청북도지사(사회재난과장), 충청남도지사(사회재난과장), 전라북도지사(사회재난과장), 전라남도지사(사회재난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(안전총괄과)

직원	<b>김동현</b>	부장	2023. 8. 11. <b>김영식</b>	부장	대결 <b>박원섭</b>	실장	<b>출장</b>
----	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건축시설안전실-3511 (2023. 8. 11.) 접수 중대재해예방과-2880 (2023. 8. 11.)

우 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예나로 128번길 24 윤현빌딩 6층 / <https://www.kalis.or.kr/>

전화 055-771-4920 /전송 055-771-4853 / dhdh6648@kalis.or.kr / 대국민 공개